#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0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정혜경·윤종오·이용우

박홍배 • 전종덕 • 이훈기

민형배 • 김태선 • 이학영

이재강 · 김남근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와 도급계약을 입찰할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 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 는 비용(이하 "인건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건비용은 월 1회 지급하여야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 정부기관
-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인건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

- 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9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2조"를 "제42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 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인건비 용"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건비용은 월 1회 지급하
<u>&lt;신 설&gt;</u>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 및 지방공단 가기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하는 자기 가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

<신 \_설>

<신 설>

<신 설>

月)[인건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 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한다.
- ⑥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정보시

#### <신 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u>제44조</u>, 제44조의2, 제46조, 제5 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 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u>제4</u> <u>2조</u>,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 항·제4항·제5항·제7항, 제 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u>다.</u>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도
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9조(벌칙) ①
제44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u>♥</u> )
②
1. (현행과 같음)
2
2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
<u>까~지</u>

제99조를 위반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